

# 자체평가 · 자기점검평가 규정

□ 제정 : 2009. 06. 15

□ 개정 : 2011. 03. 0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(이하“평가”)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자체평가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 2(평가)에 따라 수원대학교의 대학이념 및 경영, 교육, 교직원, 교육시설 및 학생정원,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자기점검 평가란 「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」 (대통령령 제21163호)에 근거하여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원대학교의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, 대학구성원, 교육, 교육시설, 대학 재정 및 경영, 사회봉사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「교육단위」라 함은 「수원대학교학칙」 상의 모집단위 학생정원 표에 있는 학과(부)와 전임교원이 소속한 대학원 단위를 말한다.

**제3조(평가의 시기)** ①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, 자기점검평가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② 자체평가와 자기점검평가가 동일 년도에 실시될 경우, 자체평가와 자기점검평가를 자체평가 혹은 자기점검평가 하나로 통일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
③ 평가의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평가대상)** ① 평가대상은 대학종합평가를 기본으로 하며,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기획·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「수원대학교학칙」에서 정하는 교육단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통·폐합된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교육단위에 통합하여 평가한다.

③ 신설되는 교육단위의 경우에는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 부터 평가한다.

**제5조(평가영역)** ① 자체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
2. 조직·운영
3. 시설·설비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② 자기점검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이념 및 경영
2. 교육
3. 교직원
4. 교육시설 및 학생정원
5.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## 제2장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위원회

**제6조(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기획·운영위원회)**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획·심의·연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기획·운영위원회(이하“기획·운영위원회”)를 설치한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기획·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, 기획실장, 교무입학처장, 평가실장, 학생지원처장, 국제협력처장, 취업정보처장,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경영지원실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기획·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
**제8조(임기)** 기획·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9조(기능)** 기획·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혹은 수행한다.

- ① 평가관련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② 평가관련 규정의 재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- ③ 평가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④ 평가 지표와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- ⑤ 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대책에 대한 총장의 자문
- ⑥ 전체 대학 구성원들이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
- ⑦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0조(회의)** ① 기획·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기획·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평가·실무위원회)** ① 평가관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·운영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평가·실무위원회(이하“평가·실무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② 평가·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회의를 총괄한다. 단, 교육단위를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, 위원장은 각 교육단위의 장이 된다.

③ 평가·실무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

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교육단위를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, 평가대상 교육단위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④ 평가·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가편람 개발 및 보완
2. 평가 세부계획과 평가실시
3.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
4. 기획·운영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
5. 기타 평가 실무에 관한 주요사항
6.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

⑤ 평가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내·외부 자문위원회)** ① 평가관리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기획·운영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내·외부 자문위원회(이하“내·외부 자문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② 내·외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회의를 총괄한다. 단, 교육단위를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, 위원장은 각 교육단위의 장이 된다.

③ 내·외부 자문위원회는 부총장, 평가실장의 당연직 위원, 중진교수의 내부위원과 동 분야에서의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 그리고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내·외부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가 관련 사업 중 수정·보완·변경할 사항 심의 및 건의
2. 평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·건의
3. 평가 추진을 위한 내·외 공동 협력사항 자문·건의
4. 기타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위원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

⑤ 내·외부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3장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의 절차

**제13조(절차)** ① 기획·운영위원회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평가계획과 평가편람은 기획·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실시 전에 총장이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기획·운영위원회는 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, 평가편람 및 평가계획을

각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각 관련부서는 자료제출 등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평가·실무위원회는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.

⑤ 평가·실무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기획·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한다.

⑥ 기획·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⑦ 총장은 자체평가·자기점검평가 규정에 따라 결과를 공시하고 활용할 수 있다.

**제14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** ① 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, 학과(학부) 및 행정부서, 단과대학들의 재정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평가결과는 교내 언론매체,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비밀유지)** 기획·운영위원회 및 평가·실무위원회 및 내·외부 자문위원회 및 평가 관련자는 학교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**제16조(시행지침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획·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